

訥齋 梁誠之의 醫學事績 - 유취 인물지 I

한국한의학연구원 학술정보팀 안상우

서론

訥齋 梁誠之(1415-1482)는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문신이자 학자중의 한 사람으로 의학에 있어서도 『醫方類聚』를 교정하고 의서시독관을 역임하였다. 그는 또 諸科六門을 설치하여 문신들에게 전문기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국경지역과 지방에 의원을 파견하는 등 의료행정에 대한 여러 차례의 奏議를 올린 바 있다.¹⁾ 그의 30여 년 활동기간은 세종-성종대에 걸쳐 조선 500년간 가장 의학을 장려하고 의사의 사회진출이 활발했던 시기로 중앙 정치무대의 주역으로 활동했던 그가 의학에 미친 영향 또한 적지 않았을 것이다.

학술 사상적인 면에서는 후기 실학사상에 영향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다방면에 박학다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에 비하여 일반에게는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의학적인 면은 검토된 바 없고 세조대 의방유취의 교정 책임자로서 겨우 의학인명사전²⁾에 올랐을 뿐이다. 물론 이것은 그가 개인의 의학저술이나 두드러진 의료행위를 남긴 행적이 드러나지 않은데 연유하지만 文士적 소양을 겸비한 儒醫로서 조선의학의 학술, 교육, 제도 등 다방면에 미친 족적을 찾아내고 그의 의학관 내지 의학사상을 더듬어 보기로 한다.

또 세종, 세조, 성종대에 이르는 의학장려책과 맞물려 의사의 신분이나 지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되지만 이 시기에 진행된 유의론과 신분제도 문제는 좀 더 전반적인 연구가 진행된 이후에 다루기로 한다. 본고에서는 다만 양성지의 의학 사적에 초점을 두고 그의 행적을 조사하여 의서 편찬과 의학교육, 의료행정, 의학사상의 측면에서 조선 전기의학사에 남겨진 그의 위상을 자리 매김해 보기로 한다.

1. 의서편찬

1) 『醫方類聚』의 교정과 諸書類聚

양성지는 27세인 1441년 문과인 진사, 생원 양시에 급제한 이후 集賢殿副修撰, 知製教, 世子

1). 『조선왕조실록』과 『눌재집』

2). 류희영 등. 『한국의약인명사전』, pp.56-57.

左司經이 되었고 세종의 명으로 의방유취가 편찬되는 시점인 1443년 - 1445년간에 左正言, 經筵官, 守集賢殿修撰과 參試官 직에 있었다.³⁾ 당시 세종은 왕명으로 의방유취 편찬에 집현전, 승문원 학사와 의관들을 공동 참여(『왕조실록』 세종27년 10월27일 기사)시켰기 때문에 양성지 또한 이 일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많고 작업의 진행과정을 익히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훗날 세조가 단독으로 그에게 의방유취 교정의 책임을 맡긴 것은 양성지의 의학지식과 이러한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⁴⁾

양성지의 의방유취 교정사업은 세조의 의지로 시작된다. 세종조의 의방유취 1차 편찬 후 의방유취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완독한 사람은 예상 밖에 위정자인 세조와 이극감 뿐이었다. (왕조실록 기사)

세조는 선대의 편찬서들을 御殿의 강독회(分門習讀)에서 읽는 과정에서 이미 의방유취의 미비점을 간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실은 세조 자신의 유지와 이극감의 동조로 어우러진다.

@ 기록1

세조4년 4월6일 의방유초 분문강습

세조5년 9월1일 세조의 유지

세조5년 9월4일 이극감의 상서⁵⁾

세조는 卽位開元하였으므로 등극한지 불과 3-4년 후 이미 완료된 의방유취의 편찬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셈인데, 즉위 초기의 정치적 불안정이 해소됨과 동시에 의서 간행을 서둘렀다는 사실은 매우 큰 비중을 두었다는 점이 인정된다.

이렇듯 치정자인 세조의 의욕적인 사업에 주도적인 인물로 선정된 사람이 다름 아닌 늘재 양성지였다. 그는 세조의 왕위등극에 공헌한 좌리공신 3등에 책봉되었고 세조의 치세기간 내내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면서 현관직을 역임한다. 그러나 그는 지방 호족 출신이었으며 세종대에는 하위 직급에 있었으므로 그다지 두각을 보인 적이 없었다.

세조의 치세책중 의욕적인 첫 사업중의 하나가 바로 의방유취의 교정으로 시작되었으며 이 일이 양성지에게 맡겨진 것은 그가 세조의 숨겨진 인물로 내정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당시 그는 의약업무와는 좀 동떨어진 大護軍의 직책이었으나 병법과 서적편찬에 관한 주의를

3). 이후에도 그는 1456년 6월 집현전 폐지될 때까지 行集賢殿副校理, 校理, 應敎, 直集賢殿, 行直集賢殿, 集賢殿直提學 등 주로 집현전의 직책을 받으며 근무하였다.

4). 성종 5년-8년의 간행작업에 있어서도 그 주관은 한계희, 임원준, 권찬 등에게 맡겨졌으나 당시까지 양성지는 노대신으로 아직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으므로 그는 세종대 의방유취 초편시로부터 간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경험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5). 이상 『조선왕조실록』 또는 줄고 「의방유취의 편찬과 조선전기 의서」 참조.

올린 바 있고 잡학 즉 기술학에 밝은 보기 드문 관리형 인재로 인정받은 것 같다.

@ 기록2 : 세조05/11/30(무신)

“행 대호군 양성지에게 명하여 『의방유취』를 교정하게 하였다.”

양성지의 실제 교정작업은 세조9년 5월경 1차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데 왕명을 받은 5년 11월로부터 추산하면 3년6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었다. 이 시간은 세종조의 초고본이 3년만에 완성된 것을 감안하면 그와 맞먹는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단순히 讎校 정도의 교정이라기보다는 재편집에 상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초편 당시 365권이었던 내용이 성종 간행시 266권으로 축약된 사실을 상기할 때 100권 정도의 분량이 이때 집약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양성지는 이 기간 중 行僉知中樞院事로 직임이 바뀌었지만 교정작업을 계속했을 뿐 만 아니라 이 무렵 이후 수많은 제반 편찬사업에 관여하게 된다.

@ 기록3 : 세조09/05/30(무오)

임금이 양성지에게 말하기를, “서책을 상고하고 교정하는 일은 어찌 되었느냐?” 하니, 양성지가 말하기를, “이미 마쳤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세종조에 서적이 산란하여 이제 비록 整齊하였더라도 이를 간직하여서 考閱에 갖추게 하라.” 하였다.

그러나 이일은 그리 간단히 끝나지 않았다. 몇 달 후 교정에 참가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문책을 받게 된다.

@ 기록4 : 세조10 1월11일 교정 착오 파직 기사

앞의 두 기록은 세조가 세종 초고본에 결코 만족하지 않았으며, 의서의 편찬에 매우 의욕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좀 더 미루어 본다면 대형 방서의 편찬시 흔히 파생되는 분류체계의 모호성이나 검색곤란 등의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이에 대한 보완에 주력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 문종 즉위후 거론된 세종초고본 편사자에 대한 포상성격의 산관제수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일언지하에 취소된 사실은 초편한 내용이 완성도가 미흡하였고 가독성이 떨어지는 체제였음이 짐작된다. 즉, 세조대 교정작업의 주안점은 중복되는 내용의 축약과 분류편제에 있었던 것이다.

대단위 문책에도 불구하고 책임자인 양성지는 일체의 언급 없이 지나치며, 오히려 동년 7월의 기록에서는 세조의 신임이 여전한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다음에 이어지는 9월의 포상승급과 연계하면 이때 이미 양성지의 주관하에 이루어진 재교정 작업에 대한 세조의 지지 표명으로도 확대 해석할 수 있겠다.

@ 기록5 :

임금이 또 양성지에게 이르기를, “사람들이 모두 경이 迂闊하다고 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4가지 있으니, 혹은 재주를 사랑하거나, 혹은 色을 사랑하거나, 혹은 마음을 사랑하거나, 혹은 재물을 사랑하는 것인데, 경과 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뿐이다.” 하니, 양성지가 叩頭하면서 사례하였다.

동년 9월 양성지의 승진과 함께 의방유취 편찬자 전원이 포상을 받게 된다.

@ 기록6 : 세조10/09/08(무오)

임금이 忠順堂에 나아가서 이조·병조를 불러서 注擬를 하도록 하여, 양성지를 이조판서로, 韓繼美를 西原君으로, 崔永滌을 行司憲掌令으로 삼고, 《武經》을 주석하고 《醫書類聚》를 편찬한 사람들은 모두 1資級을 올렸는데, 당상관은 아들·사위·조카에게 대신 가자加資하였다.

이렇게 하여 세조조의 의방유취 교정작업은 세조10년 9월에야 완료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세조의 유시로부터 소급하면 5년에 가까운 시일이 소모된 것이다. 중간의 교정과정이거나 실제 초고본과 교정본의 달라진 점 등 많은 의문점을 이러한 실록의 기사를 통하여 알 수 없는 점이 아쉽지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은 의방유취의 교정작업 완료 후에도 의서의 분류편집 작업이 계속되었다는 것이다. 시간상 만 3년을 넘긴 시점의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자.

@ 기록7 : 세조12/10/02(경자)

이날에 申叔舟·崔恒·姜希孟·양성지·丘從直·任元濬·成任·徐居正·李坡·李芮·金石梯·鄭沈 등에게 명하여 각기 郎廳 1인을 거느리고 諸書의 類聚를 揀選하도록 하였으니, 역·천문·지리·의·복서·시문·서법·율려·농상·축목·역어·산법이다.

위의 기록은 시점이나 기사내용으로 보아 의방유취 교정작업과 연속된 것 같지 않다. 또 같은 달의 다음 기사에서 비슷한 내용의 명령이 거의 동일 인물에게 시달된 점으로 보아 같은 맥락에서 거듭된 것으로 보인다.

@ 기록8 : 세조12/10/24(임술)

신숙주·최항·서거정·강희맹·임원준·성임·양성지·이예·이과·김석제를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제서의 유취를 써서 바치도록 하고,.....

기록7에 ‘醫學’이 들어 있고 거론된 인물 중 가장 의학에 정통한 것으로 보이는 인사는 임원준과 양성지, 이예를 들 수 있다. 李芮는 집현전 박사로 세종 초편본 편찬에 참여했으며, 임원준과 양성지는 세조 교정본 참여자이다. 이중 양성지는 시문이나 역사, 병법, 지리 등에 관해서

도 일가견을 갖고 있었지만 앞의 기사에 방법이 들어있지 않고 시문이나 지리 등의 분야는 여타 인물 중에서도 능통한 자가 있으므로 이 때에도 역시 양성지는 임원준과 함께 의서의 유취를 담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의서 유취 과정을 통해 문신들의 의학교육의 효과와 실용 의서의 편찬을 도모했을 것이다.

이렇듯 오랜 기간에 걸쳐 의방유취의 교정 및 의서 유취작업에 참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한가지 양성지 본인의 의학적 견해가 담긴 저술이나 기록이 별도로 전하지 않아 의방유취의 편집과정 및 의서의 출판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는 자세히 상고할 길이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이상 간략하게나마 왕조실록에 등장하는 의방유취와 양성지의 사적을 추적한 결과를 집약하면 다음과 같이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몇 가지 사실을 정리해낼 수 있다.

즉, 세조대 의방유취 교정은 초고본의 편찬 이상으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5년여의 기간을 소요하여 완료되었으며, 이것은 의학에 관한 세조 자신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의방유취 교정작업은 세조의 진폭적인 신임 아래 세종 양성지의 주도로 진행되었으며, 일관성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던 것이다. 이 사실은 역으로 세종 초편시 편찬의 주관이 확실치 않고 왕족, 고관, 문사, 의관들이 뒤섞여 작업이 진행되므로써 상대적으로 단시간에 많은 분량을 편집하였지만 완성도는 떨어졌을 것이라는 결론이 된다.⁶⁾

의방유취 교정 과정을 시기별로 대별해 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5년 11월 - 9년 5월: 1차 교정기.

9년 5월 - 10년 1월: 세조의 검토와 교정자 교체.

10년 1월 - 10년 9월: 2차 교정기. 세조의 재신임.

12년 10월 - : 諸書類聚

*1463(세조9년) 9월 동지중추원사 김예몽에게 의방유취 마감을 명.

그러나 여전히 세조 당대에 의방유취의 간행을 보지 못한 듯 예종 원년까지 의서 강독시의 교재로조차 거명되지 않고 있다.

..... 매 縣에서 1인, 郡에서 2인, 都護府 이상에서 3인씩을 취하여 전의감에 소속시켜서, 1년이나 3년간 의서를 강독하고 醫事를 학습하게 하여, 각기 散官을 제수해서 임시로 그 맡은 일

6). 세종27년10월27일의 의방유취 사명 기사는 편찬과정에서 여러 차례 추가 인원의 보충과 감독 책임의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을 알게 하고, 《향약집성방》 등을 주어 이루게 하소서. (자료 참조)

따라서 의방유취의 교정이 완료된 후에도 간행의 어려움으로 인출되지 못했을 것이고 거칠
의 의방유취를 교육용으로 조달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세조 12년 10월 이후 하달된
의서의 유취 작업은 이러한 애로사항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도 생각할 수 있으며, 실제 구
급방과 창진집 등 시급한 구급의학서 들이 의방유취를 모태로 재편집된 사실을 상기하면 의문
이 남지 않는다.⁷⁾

2) 서적의 편찬과 관리

양성지는 의방유취 교정 이외에도 고려사, 지리지, 武經 兵書 등 수많은 서적의 편찬과 교정
작업에 참가했으며, 서적의 관리에 대해서도 창신한 제안을 올리는 등 조선초기 국가문헌사업
의 정비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그는 또 집현전 학사 출신으로 규장각 등 사고의 설치에 관
해 다방면으로 건의하는 등 남다른 면모를 보였다.

양성지가 등장하는 왕조실록의 기사중 상당수가 서책이나 출판 관련 내용과 관계되어 있다.

@ 기록9 : 세조09/03/29(무오)

좌의정 권남·중추원사 최항·행 첨지중추원사 양성지에게 실록을 춘추관에서 상고하게 하
였다.

@ 기록10 : 세조09/05/30(무오)

임금이 말하기를, “세종조에 서적이 산란하여 이제 비록 정제하였더라도 이를 간직하여서 고
열에 갖추게 하라.” 하였다.

양성지가 드디어 글[書]을 올리니, 그 글에 이르기를, “그옥이 역대의 서적을 보건대, 혹 명
산에 간직하고 혹 秘閣에 간직한 것은 遺失을 대비하여 영구히 전하는 所以입니다. 前朝의 숙
종이 비로소 經籍을 간직하고, 그 圖書의 글[文]을 하나는, ‘高麗國 14葉 辛巳歲의 御藏書 大宋
建中靖國 元年·大遼乾統 9년이라.’ 하고, 하나는 ‘高麗國御藏書라.’ 하였습니다. 숙종조로부터
이제까지 6백 63년인데도 印文이 어제 한 것과 같이 문헌을 상고할 만하고, 이제 內藏된 만권
의 서책은 그 때에 소장하여 전하는 것이 많습니다. 빌건대, 지금의 장서 뒷면의 圖書는 ‘朝鮮
國第六代癸未歲御藏書 本朝 9年·大明天順 7년이라.’ 일컫고, 眞字를 가지고 이를 쓰며, 앞면의
도서는 ‘朝鮮國御藏書’라 일컫게 하고, 篆字를 가지고 이를 써서 모든 책에 두루 나타내어, 만
세에 밝게 보이며, 혹 신라와 前朝 盛時의 예에 의하여 따로 연호를 세워서 표지를 삼게 하소
서.

7). 『의방유취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의방유취의 서지학적 고찰과 실전의서의 복원
참조

신은 또 그옥이 보건대, 君上의 어필은 雲漢으로 더불어 그 昭回함이 같으며, 奎璧으로 더불어 그 찬란함이 같으니, 만세의 臣子들이 마땅히 尊閣할 바이고 寶藏해야 하는 것입니다. 宋朝 聖製의 예는 모두 建閣하고 간직하게 하되, 官을 설치하여 이를 관장하였으니, 태종은 ‘龍圖閣이라.’ 하고, 진종은 ‘天章閣이라’ 하고, 인종은 ‘寶文閣이라’ 하고, 신종은 ‘顯謨閣이라’ 하고, 철종은 ‘徽猷閣이라’ 하고, 고종은 ‘煥章閣이라’ 하고, 효종은 ‘華文閣이라’ 하여, 모두 學士·待制·直閣 등의 관직을 두었으니, 바라건대, 이제 신 등이 어제 시문을 마감하여 올리니, 麟趾堂의 동쪽 별실에 봉안하여 규장각이라 이름하고, 또 諸書 소장의 내각을 秘書閣이라 이름하여, 모두 대제학·제학·직각·응교 등의 관직을 두어, 당상은 다른 관직을 兼帶하게 하고, 낭청은 藝文祿官을 兼差하여 출납을 관장하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본국 지도를 내다 신숙주와 양성지에게 보이고, 의정부에서 修撰하게 하며, 이어서 양성지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니, 신숙주가 아뢰기를, “양성지는 젊어서부터 지리를 強記하였고, 그가 집현전에 있으면서 임무를 마칠 때를 당하면, 그 옛적에 생각하였던 한자[一字]를 손바닥 위에 쓰고, 집에 이르면 諸書를 다 상고하여 보았으니, 옛적에도 이르기를, ‘한 사람에게 갖춘 것을 구할 수 없다.’ 하였습니니다. 만약 군신으로 하여금 각기 장점을 마치게 한다면 국가의 庶事를 어찌 구제하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모든 宰樞는 모두 내 말을 들으라. 양성지의 일은 진실로 옳다. 무릇 사람이 學文을 하지 않는다면 그만이겠지만, 한다면 반드시 모름지기 이와 같이 하여야 한다. 내 또한 일찍이 한자[一字]를 써서 類推하여 행한 것이 자못 많았으니, 양성지가 손바닥에 써 가지고 깊이 생각한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하였다.

약간은 지루한 감이 있지만 위의 양성지 상서는 의방유취의 1차 교정 완료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 제안은 차후 어느 정도 실행에 옮겨지게 된다. 의방유취나 향약집성방 등 관찬 의서의 정본이 이러한 체례에 따랐다면, 사고각에 별도 보관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성종 초간전에 인출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편사시의 관례상 최소 6부 이상의 의방유취 편집본이 존재하게 된다. 즉 세종조 초고본 3부, 세조 교정본 3부 그러나 이 숫자는 내전 이외에도 의료3사에도 배급하기에 모자라는 부수이다. 또 각 4사고의 비치할 부수를 총당 하려면 적어도 8부 이상이 필요하며 결국 예상대로라면 16부 이상의 의방유취 초본이 존재할 수 있다. 또 12년 10월 이후로도 제서의 유취 작업이 계속되었으므로 사본 형태 의서유초가 상당수 작성되었을 것이다.⁸⁾

또 교정작업의 마지막 마무리로 보이는 시점인 세조 10년 4월의 기록을 보면 양성지에게 홍문관의 수장서적에 대한 비록마련을 지시하는데 문구로 보아 양성지의 요청에 의해 시행된 것이 분명하다.

8). 세조12년(실록 권40) 양성지의 주청에 따른 장서제도에 의해 계산하면 적어도 13부 이상의 동종 사본이 있어야만 관할 관서와 각 사고에 수장할 수 있다. 이에 관한 논의는 정형우의 논문 참조.

@ 기록11 : 세조10/04/26(무신)

思政殿에 나아가서 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좌의정 구치관·강성군 봉석주·지중추원사 양성지·중추원 부사 이문형·호조 판서 김국광 등을 불러서 술자리를 베풀고 정사를 의논하였다. 양성지가 홍문관의 서적에 대한 일을 아뢰자, 임금이 명하여 이문형과 같이 의논하여 事目を 만들어 오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양성지가 힘을 다하여 公事를 받드니, 그 뜻을 취할 만하다.” 하고, 이어서 양성지에게 묻기를, “경이 음양의 설에 밝은가?” 하니, 답하기를, 능합니다.” 하였다. 인하여 양성지와 더불어 역대 인군의 일을 의논하였다.

이들 기록을 살펴보면 적어도 양성지의 활동기간인 성종대까지는 의방유취의 각 판본과 여러 의서들이 잘 보관되었으리라 보인다. 또 역사상 외침이나 국내의 소요로 인한 병화가 기록되지 않았으므로 훼손이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2. 의학교육

1) 諸科六門의 설치

조선 초기 잡학의 전문직 양성은 문사의 등용 못지 않게 인재선발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세조조 노중례와 임원준 이외에 의서습독관에 임명할 인재가 없음이 거론되었으며 임원준이 의술로 중용된 사실이 두고두고 결함으로 지적되는 사실이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申叔舟는 잡과출신의 등용을 축소시켰으며, 이에 반하여 양성지는 제학과와 설치를 주청하고 이 제의가 받아들여져 아래와 같은 육문이 설치되기에 이른다.⁹⁾ 물론 제과육문은 젊은 문사출신의 잡학교육으로 관리자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지만 신분제도적 측면을 차치하고 고급인력을 상대로 기술교육이 실시되었다는 것은 상당한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조선초기의 기풍은 오히려 실용학을 중시하고 이들이 중선 중기까지 제반 기술학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조선 중기 동의보감의 편찬까지 이어지던 대형 관찬 의서의 편찬이 그 이후로 개인의 경험방서 위주로 경향이 바뀌는 사실로 대변할 수 있다.

@ 기록12 : 세조10/07/27(무인)

이어서 양성지와 임원준 등에게 명하여 여러 學門을 나누어, 학문에 6인을 두고 나이 어린 문신을 여기에 배정하였는데, 天文門에 이희원·정효상·하숙산·김초·김경례·김승경이고, 風水門에 최팔준·배맹후·김염·김제신·김준·신숙정이고, 律呂門에 성준·안집·원보륜·박

9). 甲申六月. 梁誠之上疏. 上是其言. 七月. 命梁誠之·任元濬等. 分諸學門. 門置六人. 以年少文官隸之. 曰天文門. 曰風水門. 曰律呂門. 曰醫學門. 曰陰陽門. 曰史學門. 曰詩學門.

『눌재집』 권6 遺事, pp. 378-379.

양·어세공·최한량이고, **의학문(醫學門)에 이수남(李壽男)·손소(孫昭)·이길보(李吉甫)·김의강(金義綱)·이익배(李益培)·유문통(柳文通)**이고, **陰陽門에 유지·홍귀달·이경동·박희손·손비장·유윤겸**이고, **史學問에 김계창·김종련·최숙정·유휴복·김양전·김종직**이고, **詩學門에 최경지·민수·유순·김극검·성현·이척**이었다.

육문의 설치를 통한 의학교육은 세종대 이래 의방유취의 편찬사업과 의서습독 과정에서 필요성이 절감되고 세조라는 의학에 밝은 임금의 지원하에 양성지, 임원준과 같은 유의들의 주도적 역할하에 결실을 맺었던 것이다.

2) 의학강독-醫書習讀官

의서습독관들의 강독은 세종조에 이미 시행되었고 세조조에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미 세종조에 습독관의 선발에 애로를 느꼈으며 이는 곧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절실히 요구되었음을 말해준다. 아울러 의서습독관은 의서의 편찬 및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성종대까지 이어지는 의방유취를 비롯한 관찬의서의 지속적인 편찬과 중국 의서의 인출 사실은 이러한 당시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다.

양성지는 노중례의 은퇴 이후 임원준과 함께 최고의 의학지식을 겸비한 전문관리자이자 교육행정가로 등장하며 六門을 설치하여 제도적인 뒷받침까지 마련하는 등 당시 의학을 비롯한 기술학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셈이다.

그러나 세조 사후 육문중 의학의 교육은 잘 시행되지 않았던 듯, 예종 즉위 원년에 시무책을 건의한 내용 가운데는 다시 한번 의학교육의 실행을 주청하고 있다.

.....신이 보건대, 율학의 생도는 매 州마다 1인씩 맡아서 취하니, 밀건대 이 예에 의하여 매 縣에서 1인, 郡에서 2인, 都護府 이상에서 3인씩을 취하여 진의감에 소속시켜서, 1년이나 3년간 의서를 강독하고 醫事를 학습하게 하여, 각기 散官을 제수해서 임시로 그 맡은 일을 알게 하고, 『향약집성방』 등을 주어 이루게 하소서. (자료 참조)

양성지의 이러한 공로는 묘하게도 중기이후 정조대에 빛을 발하는데, 실용적인 정조의 혁신 정치에 실무형 관료의 양성기관으로 등장하는 교서관에 16명 전원이 늘제의 외손들로 구성되었다. 이를 기이하게 여긴 정조가 왕명으로 『文襄公外裔錄』을 출간할 정도였으며, 이들은 모두 조선 후기 실학의 기풍을 마련하는데 다방면으로 일조하였다.

3. 의료행정

1) 軍陣醫 파견

양성지는 세조 즉위년에 당시 최북방인 평안도 일대의 양계지방을 시찰하고 돌아와서 주청한 「평안도편의이십사사」 중에서 의사의 파견에 대한 조목을 넣었다. 물론 이것은 결과보고서

성격의 건의문이고 전염병 성행지역인 일부 지역에 의원의 급과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자성군을 비롯한 양계 지역은 회복한지 오래되지 않은 군사작전 지역이었고 경차관의 파견 목적도 역시 군사작전지도의 작성과 함께 양성지가 병법에 밝은 이유로 군사 전략적인 의도였을 것이다. 실제 이십사종의 건의문중 대다수의 내용이 군사행정, 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자성군의 의원 파견 요청은 제도상 전반적으로 시행된 것은 아니지만 군진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겠다.¹⁰⁾

10). 平安道敬差官 양성지가 閔延·茂昌·虞芮 등 세 고을의 지도를 가지고 와서 바치고, 또 도내의 편의한 사건들을 조목별로 아뢰기를, “1. 강변에 위치한 여러 군의 방어가 매우 긴급한데, 城堡가 허술하고 군졸이 고단하고 약한데, 더욱이나 도로가 험준하고 설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잠도 편히 못자고 하루가 1년같이 지루하여 조정에 있는 신하에 비하면 십분 勤苦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聖心이 이를 통찰하시고 특히 변방을 방수하는 將吏들에게 酒果를 내리시니, 성은이 지극히 흠족합니다. 빌건대 다시 사랑과 위로를 더하셔서 兩界의 教導의 예에 의하여, 邊郡에 차임할 때는 특별히 한 資級을 더하시고, 그 3년간 무사히 戍禦한 자는, 해임하는 날 반드시 淸要한 직임을 제수하소서.

1. 양계의 감사는 다년간 외지에 있기 때문에, 비록 직임에 제수되어도 전의 受職한 告身을 바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새로 받은 고신을 署經하지 않기 때문에, 벼슬이 參上에 이른 자도 간혹 한 통의 고신도 없는 수가 있습니다. 빌건대 舊例를 거둬 밝혀서 매양 제수할 때는, 병조는 감사에게 移關하고, 감사는 각 군읍에 行移하여, 즉시 전에 수직한 직임의 계급을 상고하여, 諫院에 回報하여 서경하면, 해당 관사에서는 즉시 그 道로 밀봉해 내려서 일일이 나누어주도록 하소서.

1. 爵秩과 직함은 臣子에 있어서는 사생을 막론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池寧貴萬戶 같은 칭호는 무신들이 간혹 일컫기를 수치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또 지명은 그 연혁이 무상하여 후세에 가서는 어떤 관직인지도 모르게 됩니다. 빌건대 모두 아름다운 칭호로 고쳐서 某州 某處의 萬戶라 일컫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비록 변방에서 죽는 일이더라도 자손까지도 이를 영광으로 생각하고 유감이 없을 것입니다.

1. 閔延·茂昌·虞芮 등의 고을은 강변에 포열해 있는데, 이제 이 세 고을을 혁파하고 慈城 1군이 홀로 적의 요충을 막고 있습니다. 만일 野人이 무창의 죽전현으로부터 상봉포에 이르고, 두가을현현으로부터 하봉포에 이르며, 또 여연의 신로현으로부터 금창동에 이르고, 우예의 신로동으로부터 혼야동에 이르며, 소보리로부터 허공교에 이르게 되면, 자성의 인민들이 어찌 위태롭지 않겠습니까? 이제 상봉포·하봉포와, 금창동·혼야동에 새로이 木柵을 설치하였으나, 모두 權管이 赴防하고 있어, 방어의 모든 일이 疏闊함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다 만호를 제수하지는 못하더라도, 허공교·금창동·상봉포 등지에 우선 만호를 두어, 변방의 수어를 굳게 하소서.

1. 신이 慈城 虛空橋口子를 보니, 동쪽 산언덕에 行城을 보완하여 설치하기를 마치 제방을 쌓듯이 하였으나, 평시에는 성 위를 지나서 우예와 통하고, 유사시에는 행성을 굳게 지켜서 적의 길을 막았는데, 이제 우예를 철폐하게 되면, 허공교가 바로 적의 침입을 막게 됩니다. 청컨대 행성 수십 보를 헐도록 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비록 當關한 자가 없더라도 적이 스스로 날아서 건너지는 못할 것입니다.

1. 강계 병마사가 본부를 버리고 滿浦로 赴防하고 있는데, 만약 賊騎가 병력을 나누어서 만포를 포위하고는 곧장 邑城으로 달려가게 되면, 근본이 되는 곳을 방어할 군사가 없게 됩니다. 청컨대 함길도 여러 鎭의 예에 의하여, 土官職 수십 자리를 설치하고는, 남도 및 강변 사람들로 교체해 임명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 강계가 또한 변지 사람들의 仕宦하는 곳이 되며 평시의 방어도 착실하게 되어, 비록 변고가 있게 되어도 동요되지 않을 것입니다.

1. 강계부가 산 밖에 떨어져 있어, 만약 큰 적당이 돌입하여 성을 포위하게 되면, 외로운 성에 구원의 길이 끊어질 것이 몹시 우려됩니다. 본부 남쪽의 狄踰嶺은 사실상 남으로 지향하는 침경인데도, 이에 봉화를 설치하지 않고, 다만 강변을 따라 의주에 이르러서 다시 서울에 도달하게 하는 것은 아마도 믿을 만하지 못할까 생각됩니다. 청컨대 煙臺를 증설하여, 적유령을 지나서 熙川과 寧邊을 거쳐 봉호가 서로 照應하도록 하게 하소서.

1. 강계에는 군량의 저축이 부족하고, 또 본부의 인민들이 미곡을 가지고 남도로 가서 소금을 사 가지고 오기 때문에, 農牛와 戰馬가 태반이나 지쳐서 죽곤 합니다. 청컨대 매년 安州 등지에서 船軍이 구운 소금을 영변부의 강변까지 배로 실어다 놓고는, 강계의 인민으로 하여금 본부에 쌀을 납부하고, 영변에 가서 소금을 받아가게 합니다. 이렇게 수년간만 하면, 軍需가 자연히 충실하게 되고, 牛馬도 피로하여 耗損하는 데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1. 영변 이북과 자성 이남의 舍排한 인민으로 富實하여 甲士에 入屬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관리가 舊例에 의거하여 시험을 보지 말게 하소서. 합배한 인민이 본래 賤隸가 아니고, 변방에서 성장하여 기력이 또한 장하니, 그 감사가 되려고 원하는 자는 充補를 허용하고 부근의 閑民으로서 그의 부역을 대신 정하도록 하소서.

1. 귀성은 사통오달한 곳인데, 朴犀·金慶孫은 여기에 의거해서 사수하였고, 이제 다시 읍을 설치하니 참으로 좋은 계획입니다. 그러나 새로 이사온 인민들이 초라하기 짝이 없고, 이제 다시 龜州를 설치한다면, 定州는 다만 해변의 한 고을이 되고 말 것이니, 청컨대 정주의 길 위의 땅을 다 구주에 속하게 하고, 곧 牧으로 승격하게 하소서.

1. 운산군의 옛 雲山 지역은 영변·嘉山·博川의 세 고을의 지경을 넘어서 정주의 땅과 서로 접하고 있었으니, 이는 개 이빨처럼 서로 엮물려 있는 것에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운산에 이 땅이 없어서 魚鹽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한다면, 熙川 등 수

@ 기록13 : 세조01/11/10(신사)

1. 신은 듣건대, 慈城郡에 厲氣가 크게 성하여, 그 傳染이 그치지 않고 있는데, 남자는 가끔 면하기도 하지만, 여자는 백에 하나도 어긋남이 없다 합니다. 이러한 까닭에 그 境內에 남자는 많고 여자는 적어서 인근 고을에 求婚을 하여도 이를 거절하고 응하지 않는다 하니, 실로 괴이한 일입니다. 청컨대 좋은 醫員을 보내어 다방면으로 구료하여 치료하도록 하소서.11)(平安道便宜十八事)

십 주가 모두 산골짜기에 있어서 어염의 생산이 없는데, 어찌 유독 운산의 까닭으로 해서 그 강역을 문란케 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옛 운산은 정주에 환속하도록 하소서.

1. 안주성은 북쪽으로 청천강을 의지하고 있으니, 이는 곧 고구려가 수나라 군병을 대패시킨 곳입니다. 이제 그 城子가 낮고 미약하니, 청컨대 이를 고쳐서 쌓도록 하소서.

1. 옛 江東은 사실상 적이 침입해 오는 길의 요충입니다. 청컨대 三登의 治所를 옛 강동으로 옮기고, 三江郡이라 일컫게 하소서.

1. 평양성은 대동강 서북쪽에 있는데, 적의 무리가 만약 사면을 포위한다면, 비록 援兵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접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청컨대 성의 동북·동남 두 모퉁이에 모두 성자를 쌓아서 강변과 서로 연결하게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이 한다면 적이 쉽게 이르지 못하고 성의 동쪽으로는 큰 강의 험준함을 잡게 될 것입니다. 외성은 바깥으로 강물과 암석의 험준함이 있고, 안으로는 泉井과 풍요한 토지가 있으나, 혹시 적의 점거하는 바가 되면, 腹背로 적을 받게 되어, 內城의 수비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청컨대 모름지기 古城을 증축하도록 하소서.

1. 도내의 민폐 중에 다 제거하지 못한 것이란, 오직 사신을 맞고 짐바리를 호송하는 것과, 館夫를 유지하는 세 가지 일뿐인데, 관부의 폐단으로는 한 몸으로 몇가지 일을 하고 있으니, 곡진한 布置를 더하도록 하소서.

1. 兩界에 土官을 설치한 것은, 먼 곳에 있는 사람을 회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후에, 백관 衛士로부터 吏典에 이르기까지 모두 은혜를 입었으나, 오직 토관만이 아직 입지 못하고 있으니, 청컨대 朝官의 예에 의하여 각기 한 자금을 더하게 하소서.

1. 모든 道에 翼을 설치한 것은 都城으로부터 外藩을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으레 서군을 右翼으로 삼고 동군을 左翼으로 삼았는데, 유독 양계와 황해도는 동군을 우익으로 삼고 서군을 좌익으로 삼았으니, 이는 유달리 중앙으로부터 외방을 통제하는 뜻이 없는 것입니다. 청컨대 모든 다른 도의 예에 따라 고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11). 一, 慈城郡, 癘氣大熾, 傳染不息, 男則往往或免, 女則百無一差, 以故境內男多女少, 有求婚隣邑者, 拒而不應, 實爲異事, 請遣良醫, 多方救治. 『訥齋集』, p.295.

양성지는 무경을 주석하고 병서에 익숙하며, 실제 국방에 관련한 호군, 병조판서 등의 요직을 역임한 바 있다. 게다가 의학에도 겸통한 그가 누구보다도 군진의학의 필요성을 감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아쉽게도 그는 제도적인 군의의 설치나 군진의학의 필요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였다. 그가 무예에 능통한 장수가 아니고 병법지략에 밝은 전략가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의학에 있어서도 치료기술이 뛰어난 명의라기 보다는 의학이론에 밝은 교육자이자 의료행정가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의 이러한 행적은 다음에 이어지는 의과를 비롯한 잡과시험의 부활과 지방의 의원 파견에 대한 건의에서 두드러진다.

2) 醫科의 부활과 지방 의료정책

의방유취를 시작으로 하는 양성지의 의학사적 사적은 중국적으로 의료제도의 정비로 연계되는데, 이미 왕성한 활동기를 지나 노년에 이른 그는 의학에 있어서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지론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도모하였다.

@ 기록14 : 예종01/06/29(신사)

1. 과거를 정하는 일입니다.

신은 그옥이 생각하건대, 과거는 고금 천하에 사람을 취하는 常法으로서, 그 절목은 지극히 커서 세종조에 크게 갖추었으니, 서적을 상고하면 가히 알 수가 있습니다. 중략....., 馬·醫·樂科에 이르러서는 또한 승을罷하게 하여, 舊制를 회복한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¹²⁾

1. 醫師를 보내는 일입니다.

신은 그옥이 생각하건대, 이 백성을 위하여 성인을 내신 것은 하늘이고, 천심을 받들어 만민을 평안하게 하는 것은 성인입니다. 우리 나라는 8도의 주·군에 모두 수령을 두어서 農桑을 勸課하고 백성을 옷 입고 밥 먹게 하며, 또 각기 교수·훈도를 두어서 경학·예의를 가르치고 있으니, 聖人 軍師의 책임은 매우 지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질병의 우환은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바이므로, 官을 설치하고 관직을 나누어서 그 재앙을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이 보건대, 臣民이 입금[輦轂]의 밑에 있으면서, 醫師가 있어 그 약을 받고 醫員이 있어 그 병을 진단하니, 진실로 사람마다의 큰 행복입니다. 외방의 각 관에 이르러서는 비록 醫生이 있다 하더라도 다만 그 수를 채울 뿐이고, 비록 審藥이 있다 하더라도 어찌 사람마다 구제받을 수 있겠습니까? 빈궁한 마을의 백성들이 뜻밖에 질병에 걸리면 심하게 괴로워하는 상황을 귀와 눈으로는 차마 보고 듣지 못할 것입니다.

신이 보건대, 律學의 생도는 매 州마다 1인씩 맡아서 취하니, 벌건대 이 예에 의하여 매 현에서 1인, 군에서 2인, 도호부 이상에서 3인씩을 취하여 전의감에 소속시켜서, 1년이나 3년간 醫書를 강독하고 醫事를 학습하게 하여, 각기 散官을 제수하여서 임시로 그 맡은 일을 알게 하고, 『향약집성방』 등을 주어 이루게 하소서. 그리고 前朝 醫師의 예에 의거하여 아무 관[某官] 審藥이라고 칭하고, 특별히 그 집의 徭役을 감면하며, 鄉藥을 사용하여 한 고을의 백성을 구하여 그 성과가 있는 자는 그 자금을 더하고, 監司로 하여금 褒貶하게 하며, 3년만에 遞代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王政은 이에 막대해져서 仁壽의 疆域에 사는 이 백성들을 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¹³⁾

12). 一, 定科舉. 臣 竊惟 科舉 古今天下 取人之常法也. 其節目 至世宗朝大備 考之書可知矣.至於馬醫樂科 亦令罷之 以復舊制 幸甚. 便宜二十八事

13). 一, 遣醫師. 臣 竊惟 爲斯民 而生聖人者 天也. 奉天心而綏萬民者 聖人也. 我國家

이상의 기록은 그가 국왕의 최측근이자 중앙관서만을 역임한 문관으로 보기에 힘들 정도로 지방의료의 실태까지 상세히 파악하고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당시에 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의료인력은 서울을 비롯한 도회에 집중하고 있어 지방에서는 의료시혜가 유명무실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의원 양성 방안으로 지방 의료인을 선별하여 중앙에서 일정 기간 교육과 연수를 시행하고 이들에게는 특별히 별정직으로 임용함과 더불어 부역까지 감면해주는 최고의 혜택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지방의 의료시혜가 미치지 않는 곳까지 의원을 파견하기 위하여 제도적 정비를 주창한 그의 실천적 의료 정책은 높이 평가할 만한 것으로 여겨진다.

4. 양성지의 의학사상

양성지의 의학사상은 의학관련 專著나 논술이 없으므로 단언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러나 그는 조선전기 사회정치를 주도했던 대표적 학자이자 관리의 한 사람으로서 통치이념으로써의 유교적 맥락에서 민본주의에 입각한 애민론과 수신론에 기저한 양생사상을 고찰해 볼 수 있다.

또 그는 군사, 지리, 역사, 문교 등의 방면에서도 남다른 자주주의를 표출한 사상가였다. 그의 행적에 나타나는 자주적인 언설을 통하여 의방유취의 독자적인 편찬체계나 향약론의 전개에 직, 간접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1) 愛民論

『皇極治平圖』에서 군주의 통치윤리로 仁, 敬, 明, 岡을 중시했으며, 仁은 곧 民을 愛養하는 마음으로써, 자연히 愛民의 논리가 도출된다. 愛民은 다시 爲民, 養民과 연결되며, 이른바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민본사상에 근원한 것이다.

“사람은 천지의 마음ियो, 백성은 방국의 근본으로서 민심이 편안하지 않으면 천지의 기가 불화해지고 나라의 근본 또한 따라서 위태로워진다.”(請罷行城兼備南方)

八道州郡 皆設守令 勸課農桑, 衣食斯民, 又各置教授, 訓導, 教以經學, 禮義, 聖人軍師之責, 可謂至矣盡矣. 但疾病之患, 爲生民所苦 不可不設官分職, 以救其札疠也. 臣見臣民之居輦轂之下, 有醫師, 掌其藥, 有醫員, 診其病, 誠人人之大幸也. 至於外方, 各官雖有醫生, 徒備其數, 雖有審藥, 焉得人人而濟之, 窮村之民, 橫罹疾病, 辛苦之狀, 耳目所不忍見聞也. 臣見律學生徒, 每州責取一人, 乞依此例, 每縣取一人, 郡二人, 都護府以上三人, 來屬典醫監, 或一年, 或三年, 講讀醫書, 學習醫事, 各授散官, 權知職事, 就付鄉藥集成等方, 依前朝醫師例, 稱某官審藥, 特蠲其家徭役, 使以鄉藥, 救一邑人民, 其有成效者, 加其資, 仍令監司褒貶, 三年而達如是, 則王政莫大於此, 而可以躋斯民於仁壽之域矣. 便宜二十八事

정치의 요건으로서 민심의 수습이 좌우됨을 강조한 글이지만 마음을 몸으로만 대체해도 자연스럽게 그가 정치가로서 의학을 중요시했던 맥락이 드러나게 된다.

애민, 양민의 구체적 실천 방략으로 첫째 壽를 들고 있다. 「論君道」에서는 壽, 富, 逸欲을 만족시키는 것이 애민의 본질로 강조하였고 이는 결국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양민이 필요하게 된다.

방법론에 있어서 壽는 형벌을 줄일 것을 주장하였고, 양민의 제일은 務農을 주장하여 그의 애민론이 결국 생산력의 증대를 위한 정치, 경제사상의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것은 곧 건강증진 자체를 목표로 하는 순수 의학적 견지에서는 한계성을 들어내기도 하지만 관리로서의 보건행정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시대적 선구성을 확보하게 된다.

2)修身論

『皇極治平圖』에서는 통치자로서의 윤리규범으로서 正心, 修身, 齊家, 治國을 제시하였다. 그중 수신의 구체적 실천방법 다섯 가지 가운데, 다섯째 항목으로 섭양에 도를 지킬 것이 들어 있다.(論君道十二事) 사실 修身 항목은 治者에게만 국한시킬 수 없는 전통적 유가의 덕목으로 일반 개인에게 모두 과급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며, 섭양의 도리란 儒者에게 있어 당연한 수신의 실천덕목이 되게 된다.

그는 관리가 아닌 범인 즉, 工商을 제외한 일반서민은 자신의 희망에 따라서 儒, 武, 天文, 地理, 醫藥, 卜筮 등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범인이 독서를 하면 儒가 되고, 射를 배우면 武가 되며, 天文, 地理, 醫藥, 卜筮에 이르기까지 각각 所業이 있다.”

즉, 유자나 무인이나 그 밖의 기술직은 범인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직업으로서 그러한 직업을 통해 관리가 되면 그것이 곧 士인 것이다.¹⁴⁾

따라서 그의 의학 사상은 유의론에 입각한 선비의식의 발로이며, 신분적인 차등의식에 얽매이지 않았다. 물론 이것이 양성지 만의 독특한 사상이었던 것은 아니고 당시 정치적 상황과 사회제도적인 분위기, 치정자의 논리가 어느 정도 부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⁵⁾ 아울러 당시로부터 조선 후기에 이르도록 일관되게 조선의 유의를 대변했던 醫國論과 밀접한 상관성을 갖고 있으리라 본다.

14). 韓永愚. 『朝鮮前期社會思想研究』 서울, 지식산업사, 1987. 2판. p. 208.

15). 예컨대 세조10년의 실록 기사에서는 왕이 “무릇 儒者라 하더라도 천문·지리·의약·복서를 모두 알아야만 비로소 通儒라고 이를 수 있는데, 너는 그런 방면에 능한가?” 라고 하여 당시 분위기의 일단을 볼 수 있다.

3) 自主論

그는 국왕이나 유생의 經史 교육에 관하여 여러 차례 주의를 올린 바 있는데 특히 역사, 지리 분야에 있어서는 고려사, 실록편찬에 참여하였고 수종의 지도를 제작하는 등 당시 최고수준의 역사인식과 실질적인 지식을 갖춘 인물이었다. 그의 자주적인 역사의식은 여러 곳에서 피력되는데, 세조원년 7월에는 “우리 나라 사람들은 중국이 강성한 것만 알고 우리 역사를 돌이켜 볼 줄 모르니 몹시 그릇된 것이다.”¹⁶⁾라 하여 자국의 역사 문화에 대한 주체적 긍지를 강조하였고, 예종 원년 6월에는 “신이 가만이 고려사를 살펴보건대.....단지 나라안에서만 둘러보게 하지 말고, 史略 같은 것은 중국이나 일본에 보내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은 일시의 계획이 아니라 앞날의 무궁한 계획을 삼는 것입니다.”¹⁷⁾라 하여 우리 역사서의 전파, 수출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이 문화적 백년대계임을 강조하면서 주체적 긍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의 자주적의식은 자국의 문화와 風俗을 固守하고 우리 나라 先賢을 문묘 배향에 늘릴 것을 주장하는데서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바라건대 의복이나 관대에 있어서 朝服 외에는 반드시 중국의 제도를 따르지 않아도 되고, 말인즉 통역 이외엔 몸에 익은 습관을 바꾸려고 애쓸 필요가 없으며, 비록 연등회나 돌싸움일 지라도 옛적의 풍속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¹⁸⁾

문화, 풍속에 있어서는 언어, 의관 뿐 만아니라 연등이나 擲石 등의 민속에 이르기까지 구속을 유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 우리 문화가 중국과 대등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文廟에 配享된 사람은 薛聰과 崔致遠, 安珣 세 사람 뿐이니 雙翼, 崔冲, 李齊賢, 鄭夢周, 權近 등을 모실 것을 주장하였다.

그의 이러한 자주적인 주체의식은 의방유취의 교정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보인다. 예컨대 중국 의서를 총망라하여 취사선택한 독특한 편집체계의 구성이라든지 중국 의서와 동등한 입장에서 자국 의서를 인용한 것 등이다. 나아가 지방의 교육에 있어서도 자국산 鄉藥을 위주로 시혜할 것을 주장한 것은 그가 아직 조선 전기의 신선한 자주의학의 기풍을 간직한 의학사상가였음을 말해 준다.

5. 연보

16). 東方之人, 徒知有中國之盛, 而不知考東方之事, 甚爲不可.

17). 臣竊惟高麗史.....非徒行之境內, 使如史略, 傳之中國, 傳之日本, 亦可也. 此非爲一時之計也, 爲萬世無窮計也.

18). 乞衣冠則朝服外, 不必盡從華制, 言語則通事外, 不必欲變舊俗, 雖然燈, 擲石 亦從古俗, 無不可也.

<年譜>

생년	조대	생애	관직	활동사항
1415년, 1세	태종15년(乙未)	출생		
1441년, 27세	세종23년(辛酉)	진사 · 생원양시 문과급제(제2인).	集賢殿副修撰. 知製敎. 世子左司經.	
1443년, 29세	세종25년(癸亥)		左正言, 經筵官, 守集 賢殿修撰	
1444년, 30세	세종26년(甲子)			參試官
1445년, 31세	세종27년(乙丑)			
1446년, 32세	세종28년(丙寅)		兼春秋館記事官	
1447년, 33세	세종29년(丁卯)			參試官
1448년, 34세	세종30년(戊辰)			
1449년, 35세	세종31년(己巳)			上疏請罷行城
1450년, 36세	세종32년(庚午) 2월 승하, 문종 즉위		行集賢殿副校理. 經筵 檢討官. 世子左司經兼 春秋館註官. 集賢殿校 理. 世子右文學.	備邊十策 올 림. 參試官.
1451년, 37세	문종1년(辛未)		朝奉大夫. 集賢殿應敎. 左文學.	東西兩界一體 備禦疏 올림. 參試官.
1452년, 38세	문종2년(壬申) 5월 승하, 단종 즉위		直集賢殿.	
1453년, 39세	단종1년(癸酉)			官制(경국대전) 교정과 지도 제작. 專任地圖事. 參試官
1454년, 40세	단종2년(甲戌)		中訓大夫.行直集賢殿.	皇極治平圖 찬진.

생년	조대	생애	관직	활동사항
1455년, 41세	단종3년(乙亥) 윤6 선양, 세조 즉위개원 1년		集賢殿直提學. 知制 敎. 經筵侍讀官. 通訓 大夫.	論君道十二事. 평안 삼읍지리지지도 작 성. 平安道便宜十八 事, 策原從功臣二等
1456년, 42세	세조2년(丙子)	6월에 집현 전을 폐함.	通政大夫. 讀券官.	便宜二十四事 行世子左輔德.
1457년, 43세	세조3년(丁丑)		判書雲觀事. 直寶文館 知製敎. 中樞院事.	便宜疏四條
1458년, 44세	세조4년(戊寅)		兼春秋館編修官	明皇戒鑑 번역. 醫 文類聚 교정
1459년, 45세	세조5년(己卯)			
1460년, 46세	세조6년(庚辰)		嘉善大夫. 同知春秋館 事. 中樞院副使.	孫子註解 교정. 奉 命使臣으로 명에 다 녀옴. 試官.
1461년, 47세	세조7년(辛巳)		嘉靖大夫. 同知中樞院 事	
1462년, 48세	세조8년(壬午)		行僉知中樞院事	
1463년, 49세	세조9년(癸未)		資憲大夫. 弘文館提 學.	命撰東國通鑑.
1464년, 50세	세조10년(甲申)		吏曹判書.	上巡行-守相. 防納 의 폐지를 청하는 疏를 올림. 軍政十 策을 올림.
1465년, 51세	세조11년(乙酉)		知中樞院事. 司憲府大司憲.	勸農四策, 讀券官. 盧思愼과 함께 五倫 錄 편찬. 軍政便宜 十事 소.
1466년, 52세	세조12년(丙戌)	拔英試 2등 합격.		諭善書. 君國便宜十 事, 書籍十事 소
1467년, 53세	세조13년(丁亥)			北方備禦十八策
1468년, 54세	세조14년(戊子) 9월 傳位, 睿宗 即位.	睿宗即位. 承 命 南怡등의 죄를 국문.		上巡行. 공이 守相 이 됨.

생년	조대	생애	관직	활동
1469년, 55세	예종1년(己丑) 11승하, 성종즉위			韓明澮·崔恒 등과 함께 세조실록 찬수. 試官. 上疏凡二十八條
1470년, 56세	성종1년(庚寅)			便宜十六事
1471년, 57세	성종2년(辛卯)	策純誠明亮佐理功臣封南原君.	知中樞院事.	上疏請功臣. 試官. 便宜三十二事. 세조실록 撰進
1472년, 58세	성종3년(壬辰)			邊防四事. 便宜四策. 大典교정(上四十五事). 睿宗實錄 三綱史略 찬진.
1473년, 59세	성종4년(癸巳)			軍政四事. 奉朝賀. 沿邊防戍圖
1474년, 60세	성종5년(甲午)			
1475년, 61세	성종6년(乙未)			兩界防戍圖. 兵事四策
1476년, 62세	성종7년(丙申)	封南原君.	行同知中樞府事. 兼春秋館事. 弘文館大提學	
1477년, 63세	성종8년(丁酉)	봉남원군.	行司憲府大司憲. 工曹判書.	奉朝賀. 上疏論事 大大國斥琉球二事. 讀券官.
1478년, 64세	성종9년(戊戌)			上疏論風俗學校十二事. 上軍國秘計二事. 八道地理誌. 팔도지도
1479년, 65세	성종10년(己亥)			
1480년, 66세	성종11년(庚子)			
1481년, 67세	성종12년(辛丑)			
1482년, 68세	성종13년(壬寅)	6월卒, 시호 文襄		

맺음말

눌재 양성지는 조선전기 의학사상 대표적인 유의 중의 한 사람으로 세조대 의방유취를 교정

하는 최대의 공적을 세웠다. 아울러 의학시독관으로 제과육문을 설치하여 의학교육 및 유의의 육성책을 마련하였으며, 지방의와 군진의를 파견하도록 건의하고 중단되었던 의과시험의 복구를 주청하는 등 의료행적에도 많은 족적을 남겼다.

그는 조선 초기 세종-성종의 치세 연간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정책과 주체의식을 발휘했던 인물로 의학분야에 있어서도 의서의 편찬과 보존, 선진 의학설의 도입, 전문 기술직의 양성과 의학교육, 지방의료조직의 확충, 군진의의 파견 등 의료제도, 의료행정의 측면에서 한국의학사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고 평할 수 있다.

의학사상 측면에서 전통적인 유가윤리에 입각한 애민론, 수신론은 백성의 건강과 안녕을 보장해야 한다는 치정자의 논리를 부여함으로써 당시로선 나름대로 인간의 건강권을 확보하는데 일정 가치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이것은 나아가 신분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의료인을 비롯한 잡직의 활로를 열어줌으로써 전문 의학지식을 갖춘 고급 의료인력을 배양시킬 수 있었다. 또 그의 자주적인 사상은 의학분야에 국한된 것은 아니나 언어, 문화, 풍속 등에서 자주적인 기풍을 강조하면서 독자적인 역사인식을 드러내었다. 한국한의학이 여말선초 鄉藥論으로부터 시작하여 東醫學으로 이어지면서 중국과는 다른 자주의학의 토양을 마련하는 의학사적 연계선상에서 그의 자주적인 의학사상이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참고문헌

『南原梁氏文獻錄』(국립중앙도서관장)

『訥齋集』(韓國文集叢刊9).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영인.

『梁文襄公外裔錄』(국립중앙도서관장)

『조선왕조실록』CD-ROM

南晚星 역. 『訥齋集』(韓國名著大全集9). 서울: 大洋書籍, 1980 중판.

孫弘烈. 「朝鮮前期 醫官의 任用과 그 사회적 지위」 史叢30, 1986.

孫弘烈. 「朝鮮前期 醫官의 試取」. 崔永禧教授華甲記念論叢, 1986.

孫弘烈. 『韓國醫療制度史研究』. 경희대학교대학원, 1985.

孫弘烈. 『韓國中世의 醫療制度研究』. 서울: 修書院. 1988.

安相佑 외. 『의방유취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서울: 한국한의학연구원, 1998.

安相佑. 「의방유취의 편찬과 조선전기 의서」. 전국한의학학술발표대회, 1999.

李成茂. 『韓國의 科擧制度』. 서울: 集文堂, 1994. 개정증보.

鄭亨愚. 「梁誠之의 文化的 業績」. 『人文科學』, 연세대학교.

韓永愚. 『朝鮮前期社會思想研究』. 서울: 지식산업사, 1987. 2판.